

세 액 감 면 신 청 서

(앞 쪽)

제 출 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⑥ 업 종		⑦ 사업개시일자	
⑧ 사업연도		년 월 일	년부터 일까지	

1. 수증법인

⑨ 법인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대표자 성명		⑫ 업 종	
⑬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⑭ 이월결손금		⑮ 기타 채무면제 · 자산수증익	

2. 자산 양도 및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

양 도				증 여		②② 농어촌 특별세액
①⑥ 자산명	①⑦ 취득가액	①⑧ 양도일자	①⑨ 양도대금	②⑦ 증여일자	②⑧ 증여금액	

3. 자산을 증여한 경우

②③ 자산명	②④ 장부가액	②⑤ 증여일자	②⑥ 양도대금	②⑦ 자산증여액 합계

4. 감면받을 세액

②⑧ 손금산입액		②⑨ 감면세액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7조제24항
[] 제37조제25항
[] 제116조의3제25항
[] 제116조의3제26항
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 증여계약서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방법

1. ⑭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⑮기타 채무면제·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3. "2. 자산양도 및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3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8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이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3.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2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8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이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5. ㉞손금산입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2항(「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8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2제9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증여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3항(「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8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2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2제11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상당액